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1
----------	-----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21일 이정인의외 17명 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3.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정인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속한 학대 신고 및 사후 처리를 위하여 통일된 기관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변경 (안 제9조의 제명).
-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변경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

- 장애인복지법¹⁾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사후 지원할 전담기관으로 지역 장애인 옹호기관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복지부 지침안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라는 별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옹호기관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명칭 변경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의 제명).
-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변경(안 제9조의2).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현행	개정안
<p>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p> <p>③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p> <p>② 기관에는 기관장-----.</p> <p>③ 기관장-----.</p> <p>④ ----- 기관-----.</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p> <p>①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센터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p>	<p>제9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기관은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기관은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기관은 -----.</p>

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제9조의3(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운영 위탁) ---- 기관 ----

-----.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기관 ----

-----.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1)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설립배경

○ 장애인 학대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

해 장애인을 사후 지원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14년, 신안 염전사건, '16년, 청주 축사사건·타이어수리점사건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²⁾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부터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지부장관에 의한 중앙권익옹호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의 지역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은 의무사항임**

(2)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운영 개요

○ (설치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으며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포함한 총19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 중임.

* 중앙1개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소(경기도 2개소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현황>

(’19.6월 기준)

1	중앙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	강원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서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12	충북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3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3	충남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대구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4	전북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주요개정내용: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함(제59조의9 신설, 59조의11로 변경)

5	인천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	전남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광주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	경북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대전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	경남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8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	경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	경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처: <http://www.naapd.or.kr/>(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 (주요역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실태 조사, 프로그램 개발,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 사후관리,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 등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과 로고를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추진 체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칭·로고 및 신고번호 >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지역옹호기관')의 명칭은 '(지역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일
 - 예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옹호기관의 로고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사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고전화번호는 ☎1644-8295로 전국 공통으로 사용

*출처: 2018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2)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³⁾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2014. 2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등

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구제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 설치연도 : 2014.2.13
- 사업내용 : 인권침해 및 학대 상담·사례관리·조사·구제,교육 등
- 인 원 : 11명(센터장, 팀장, 변호사 3, 직원 6)
- '19년사업비 : 1,114백만원(시비1,018백만원, 국비 96백만원)

-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 및 로고를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아닌 별도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권고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옹호기관’이 아닌 ‘장애인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로 명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 서울시 장애인 관련 위원회 등으로부터 ‘장애인인권센터’ 명칭 사용이 이용자의 편의에 부응한다는 여론 확인과, 재원의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장기적인 사업예산 확보 등을 이유(전국공통의 명칭 사용시 국가 사업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어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로 센터 로고 및 명칭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음⁴⁾.

4) 서울시는 '17년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를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한 「2017년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안내(안) 의견조회」 시에도 동일의견을 복지부에 회신한 바 있음.

< 명칭 및 로고 >

구분	복지부 권고안	서울시
로고		
명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다.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장애인복지정책과)는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중앙 및 지역 장애인 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한 학대신고 및 사후처리를 위하여 통일된 기관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인권증진조례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므로 이견이 없음을 밝힘.

3 종합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소 중 별도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자체 센터 명칭을 사용하던 광주, 전남의 경우 '17년 복지부 지침 권고안대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 광주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⁵⁾

- 다만, 5년간 사용되던 센터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및 장애인옹호기관의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5) 출처: 중앙장애인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1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이정인, 정진술, 김인호,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홍성룡, 노승재, 김소영,
강동길, 봉양순, 김소양,
이병도, 오현정, 박순규,
이영실, 김제리, 김혜련
의원 (18명)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속한 학대 신고 및 사후 처리를 위하여 통일된 기관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의 제명).

나.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변경(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을“(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에는 센터장”을 “기관에는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장”을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센터는”을 각각 “기관은”으로 한다.

제9조의3 전단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4 전단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u>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를 설치·운영한다.</p> <p>② <u>센터에는 센터장과</u>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p> <p>③ <u>센터장은</u> 상근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u>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u>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9조의2(<u>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u>)</p> <p>① <u>센터는</u>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② <u>센터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p>	<p>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 ----- ----- <u>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u>을 ----- -----.</p> <p>② <u>기관에는</u> 기관장----- -----.</p> <p>③ <u>기관장</u>-----.</p> <p>④ ----- <u>기관</u>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u>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u>) ① <u>기관은</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기관은</u> ----- ----- ----- -----.</p>

수 있다.

1. 2. (생략)

③ 센터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 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제9조의3(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③ 기관은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운영 위탁) ----- 기관-----

-----.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기관-----

-----.